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10월 4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한화진

●대통령령 제33782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”를 “폐기물처리기술사·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가스기능장·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화공기사”를 “화공기사·정밀화학기사·화약류제조기사·환경위해관리기사·화학분석기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산업안전산업기사”를 “화약류제조산업기사·산업안전산업기사”로, “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”를 “가스산업기사·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”를 “환경기능사·위험물기능사·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”로 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·기능장·산업기사·기능사,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·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

<법제처 제공>